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검 토 보 고

■ 한창민의원 등 110인(의안번호 제220440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문	1
III.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10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문

가.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안전이 위협당한 사건이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참사임.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을 보다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참사위원회는 피해자와 미래 세대가 참사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피해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참사의 전 과정을 되짚어보

며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권고안에 담은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국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더불어,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제 21 대 국회가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안타까운 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제 22 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을 보호하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다짐함.

나. 주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경제 논리 등을 들어,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참사가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여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 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인정 사망 피해자 1772 명, 생존 피해자 4114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99 명이 사망하고 5 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복된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습

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48 조제 3 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건, 세월호 참사 분야 32 건,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 건의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대상기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4.16 세월호참사 담당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 안전 대책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입니다. 또한 권고 중에는 법률 개정사항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국회는 보고 받은 이행 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고 집행 촉구 및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국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권고

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사회를 ‘생명 중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9 대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점과 함께 국회의원 중 일부와 정치권이 참사 피해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정식으로 국회 차원의 사과를 함과 동시에,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재난 참사 최소화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제 21 대 국회가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안타까운 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 22 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을 보호하는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짐합니다.

Ⅲ. 검토의견

□ 결의안은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¹⁾(이하 “사회적참사위원회”라 함)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재난 참사 최소화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을 충실히 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제22대국회에서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임.

□ 사회적참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3항²⁾에 따라 2022년 9월에 가슴기살균제참사 분야 26개, 세월호참사 분야 32개, 피해지원 일반 및 관리 분야 22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권고현황>

분 야	가습기살균제참사	세월호참사	재난 및 피해지원 등
권고받은 기관	환경부 등 11개 기관	해양수산부 등 13개 기관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
권고과제 건수 (총 80개)	26개	32개	22개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4항·제5항³⁾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총 109건의 정부 기관별 권고사항 중 46건 ‘조치완료’, 25건 ‘대안이행’, 25건 ‘이행추진’, 그리고 13건은 중장기 검토로 나타나⁴⁾,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연 도	분 류	조치 완료	이행 추진	대안 이행*	중장기검토	기 타**	총 계
2023	과제별(개)	71개			8개	1개	80 개
	기관별(건)	30건	34건	30건	15건	19건	128 건
2024	과제별(개)	73개			6 개	1 개	80 개
	기관별(건)	46 건	25 건	25 건	13 건	19 건	128 건

* 이행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법령·제도의 개선·보완으로 이행 같음

** 국회의장 소관 과제(단독 과제 1개, 부처 공동과제 포함 19건)

(자료: 국무조정실)

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상세한 권고사항 이행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2024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권고사항 이행 지연의 주요 이유는 연구용역·전문가자문·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지연, 조직·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지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간 필요 등으로 나타남.
- 결의안은 권고사항 이행 지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권고내용의 이행 점검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동 결의안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⁵⁾이므로, 양 법률 간 규율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 총괄표

연번	기관(25개)	과 제 현 황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재난 피해지원 일반	총 계
1	대통령	1	1	-	2
2	국회의장	7	4	8	19
3	국무총리	1	-	2	3
4	기재부장관	-	1	-	1
5	교육부장관	-	-	1	1
6	과기정통부장관	1	-	-	1
7	법무부장관	4	-	1	5
8	국방부장관	-	3	-	3
9	행안부장관	-	4	15	19
10	산업부장관	1	-	-	1
11	복지부장관	2	-	2	4
12	환경부장관	19	-	1	20
13	고용부장관	3	-	-	3
14	해수부장관	-	15	2	17
15	국무조정실장	-	2	-	2
16	인사처장	-	3	-	3
17	법제처장	-	1	-	1
18	공정거래위원장	2	-	-	2
19	경찰청장	-	3	-	3
20	해양경찰청장	-	8	2	10
21	국정원장	-	4	-	4
22	질병청장	1	-	-	1
23	국가기록원장	-	-	2	2
24	국가인권위원장	-	-	1	1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수부로 소관 변경	-	-
총계		42	49	37	128

별첨 1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총 80개)

분야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23년 현황	'24년 현황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분야 26개 (42건)	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 사과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 피해자 지원	대통령 환경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개정*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 대안 이행	- 조치 완료
	3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 이행 추진	- 이행 추진
	4	▶신속심사 대상을 쉼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5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을 구제법에서 구제 및 지원법으로 체제 개정* * 피해지원 항목확대,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확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간병비 지급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 대안 이행	- 조치 완료
	6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건강 조사·연구 진행,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조치 완료
	7	▶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개선 등 전문위원 운영 투명성 제고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조치 완료
	8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민·관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9	▶디스커버리 제도(소송전 증거 절차) 도입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제도 추진	법무부장관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10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 가능	국회의장	-	-
	11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실증 책임 규제규정 도입	공정거래위원장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3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위원회	국무총리	대안 이행	대안 이행
	14	▶화학물질관리본부(환경부)·위해성평가부(국립환경과학원)로 기조조직 확대 및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	환경부장관	중장기 검토	대안 이행
	15	▶국가독성연구전담기관 또는 국가독성연구프로그램 마련	과기정통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16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및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1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성격 확립 및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이행 추진	조치 완료
	18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9	▶효율적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20	▶중점관리물질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환경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21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환경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 중장기 검토	- 중장기 검토
	23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확대 도입	산업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공표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국민연금 ESG평가지표 내 소비자안전-공급망 실사인권실사 등 반영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복지부장관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조치 완료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조치 완료
	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분야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23년 현황	'24년 현황
4.16 세월호 참사 분야 32개 (49건)	1	▶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및 업무체계 구축	대통령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	▶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수사 또는 감사 실시, 불법행위 발견시 고발 및 징계 요청	국정원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경찰청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국방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국조실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행안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기재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법제처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인사처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3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 방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규정	국회의장	-	-
			인사처장	이행 추진	이행 추진
	4	▶ 기록물 고의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 제재 및 처벌 위한 「공공기록물법」 등 개정	국회의장	-	-
			행안부장관	대안 이행	조치 완료
	5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	인사처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6	▶ 사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운용	국정원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국방부장관	대안 이행	조치 완료
			경찰청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7	▶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전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국정원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8	▶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재정비 및 독립 감찰기구 도입	국회의장	-	-
			국정원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경찰청장	대안 이행	대안 이행
			국방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9	▶ 세월호지원단 총괄 역할 강화 및 장기지원계획 수립 등 피해지원 개선	국조실장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0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시까지'로 변경	해수부장관	이행 추진	대안 이행
	11	▶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도 도입	해수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2	▶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및 구체적·전문적 교육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3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 및 책임 이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분야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23년 현황	'24년 현황
	14	▶ 선종·항로 고려 등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해수부장관	이행 추진	조치 완료
	15	▶ 평가기간의 전문성 확보 등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개선	해수부장관	이행 추진	조치 완료
	16	▶ 「해운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개정* * 운항관리 업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임을 명시	해수부장관	중장기 검토	이행 추진
	17	▶ 내항여객선사 자체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여객선 안전 등급 평가 제도 등 도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해수부로 소관 이동)	해수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18	▶ 내항일반선 분야 해사안전 감독관 인원 확충 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19	▶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 선사 내 안전관리자 지정,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해양경찰청장	이행 추진	이행 추진
	20	▶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 개선	행안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1	▶ 세월호 조사기구 권고사항 이행 절차 및 결과 기록 등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2	▶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해수부장관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23	▶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 결함신고제도 관련, 신고주체 특정, 위반시 벌칙부여 등	국회의장	-	-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4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신고 절차 개선, 수집된 정보 선사 제공 및 교육 활용 방안 마련	해수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5	▶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	해수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26	▶ 조난 현장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실질적 수색구조 활동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이행 추진	조치 완료
	27	▶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해양경찰청장	이행 추진	조치 완료
	28	▶ SAR 안전감독관 운영 법적 근거 및 구조본부 운영 점검 기능 강화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9	▶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 내 세계해상 조난과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운용 및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해양경찰청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30	▶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 일률적·정기적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31	▶ 수색구조 지휘관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등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32	▶ 구조 자원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수색구조 민·관·군 간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장	이행 추진	조치 완료

분야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23년 현황	'24년 현황
재난 및 피해 지원 일반, 자료 기록 분야 22개 (37건)	1	▶ 독립·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인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 대안 이행 대안 이행 대안 이행	- 대안 이행 대안 이행 대안 이행
	2	▶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안전/재난)으로 분법 추진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 이행 추진	- 이행 추진
	3	▶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재난관리 중심으로 전환, 안전분야는 부처별 추진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이행 추진
	4	▶ 안전정보 연계를 위한 ^(가칭) 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 대안 이행	- 대안 이행
	5	▶ 재난피해자를 위한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국무총리	대안 이행	대안 이행
	6	▶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7	▶ 피해자(가족)에게 수습·수색 정보제공 법제화 등 수습홍보 개선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 대안 이행	- 대안 이행
	8	▶ 구호 약자의 범위 법제화 등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개선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9	▶ 재난회복 개념 명시하고 무형의 피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복구 개선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0	▶ 동원·봉사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 강화를 위해 재난법, 의사상자법, 수상구조법 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복지부장관 해양경찰청장	- 이행 추진 대안 이행 대안 이행	- 이행 추진 조치 완료 조치 완료
	11	▶ 재난 추모사업 법제화 및 매뉴얼 마련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 이행 추진	- 이행 추진
	12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	행안부장관	대안 이행	대안 이행
	13	▶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매뉴얼 등 표준절차 개선	행안부장관	조치 완료	조치 완료
	14	▶ 선박사고시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지휘공백 해소 방안 마련, 관계기관 역할 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에 반영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이행 추진	조치 완료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5	▶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16	▶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매뉴얼 개선 등 재난심리지원 강화	행안부장관	이행 추진	조치 완료
	17	▶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18	▶ 손해배상시 남녀 형평성, 만12세 이하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 책정	법무부장관	이행 추진	대안 이행
	19	▶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교육기관 역할 개선	교육부장관	이행 추진	이행 추진
	20	▶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자 법률지원 규정 신설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 대안 이행	- 대안 이행
	21	▶ 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필요	국가기록원장	조치 완료	조치 완료
	22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방안 마련	국가기록원장	이행 추진	조치 완료

(자료: 국무조정실)